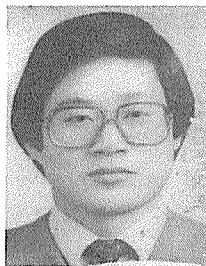


國內石油製品價格은 어떻게 決定되나



劉 承 烈

〈油公 業務開発部・開発課長〉

I. 序 言

일 전에 내가 근무하는 회사의 去來先인 KOAX(주한美国人購買契約處)로부터 우리 나라의 振發油 價格이 어떻게 해서 外國에 比하여 2倍 내지 3倍나 높게 되었는지 油價를 擔當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直接 說明을 듣고 싶다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國內匯發유 價格이 왜 그렇게 높은가라는 質問을 对하게 되면, 石油 價格에 조금이라도 关심을 기울였던 분은 特別消費稅 等의 높은 政府 部門 費用을 첫번째 理由로 쉽사리 떠올릴 것이며, 石油 製品價格 策定 内容을 아는 사람은 나프타등 產業用 油類를 低價로 供給함에 따른 損失을 充當하기 위하여 振發油나 LPG의 價格을 높게 策定하고 있다는 說明을 덧붙일 것이다.

이러한 說明으로써 과연 充分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단지 政府가 價格을 높게 策定했기 때문에 價格이 높다는 說明만으로 누구나가 納得할 수 있는가는 疑問이다.

석유제품가격 인하를 둘러싼 열풍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나프타供給不足 事態에 对한 대처方案의 論難이 한창이다. 이를 契機로 우리 나라의 石油製品價格의 形成過程을 市場 機能을 中心으로 살펴보고, 앞으로의 長期 價格 管理方向을 提示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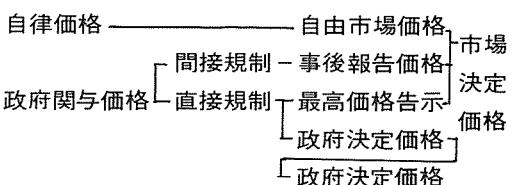
II. 우리 나라의 價格 決定 類型

價格은一般的으로 市場 原理에 따라 需要와 供給에 依하여 決定된다.

그러나 이것은 競爭 市場에 있어서는妥當하지만, 競爭이 制限된 市場에서는 價格이나 供給量이 自意에 의하여 決定될 우려가 있으므로 政府가 이들 價格에 对하여 관여하는 것이 보통이다.

政府의 價格 管理 方式은 크게 보아 間接 規制와 直接 規制의 둘로 구분된다. 直接 規制는 政府가 價格 자체를 決定하거나 最高 價格을告示하는 것이고, 間接 規制는 價格 決定을 企業의 自律에 맡기되 競爭을 促進하는 한편, 價格調整이 있을 경우 事後에 政府에 報告하게 하여 間接的으로 管理하는 것이다.

結局 우리 나라의 價格決定 類型은 다음과 같이 区分될 수 있다.



□ 特輯/低油價時代의 에너지政策方向 □

政府가 間接的으로 規制하고 있는 製品 価格 으로는 獨과점 가격과 国民生活에 지대한 영향 을 미치는 시멘트, 合板, 鐵鋼등 58개 品目이 있 으며, 最高 価格을 告示하고 있는 製品은 石油 석탄, 연탄 등이다.

그리고 철도, 전기, 통신 요금등 공공요금은 政府가 直接 決定하고 있다.

III. 寡占供給 狀態의 価格 決定

앞서 説明된 바와 같이, 石油製品 価格은 最高 価格 告示制로서 精油業者 또는 販賣業者가 받을 수 있는 最高限度를 政府가 告示하고 있다.

여기서 有意할 点은 政府가 단지 最高 価格을 告示할 뿐이지, 価格 自体를 決定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点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原価에 比해 훨씬 높게 告示되어 있는 捉發油 価格이 競爭에 의하여 멀어지지 않고, 그대로 市場에서 通用되고 있는 것일까?

精油社 間에 담합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石油 製品은 精油 5社가 供給하고 있으므로 寡占 供給 狀態이다. 寡占 公급 시장에서의 価格 決定 理論에는 여러 가지의 學說이 있으며, 価格이 安定的인가 不安定한가에 대해서도 賛反 두가지의 見解가 對立되고 있다.

과점의 本質은 企業의 数보다는 한 企業의 行爲가 他 企業의 經營에 현저한 영향을 준다는 데에 있다.

과점 가격이 安定的이라는 主張은 과점 供給者 중 한 企業의 行爲에 대한 他 企業의 反應을 예측하는 데서 出發한다. 만약 한 供給者가 販賣量의 增大를 꾀하기 위하여 価格을 引下한다면, 他 供給者의 販賣는 減少될 것이다.

따라서 他 供給者는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価格을 내릴 것이며, 이렇게 되면 결국 価格 競爭 만을 반복하게 될 뿐 販賣量은 期待한 만큼 增加되지 않는다. 즉 価格을 내리더라도 각 寡占 供給者가 享有할 수 있는 需要의 增加는 価格의 全般的인 引下에 따른 消費增加에 불과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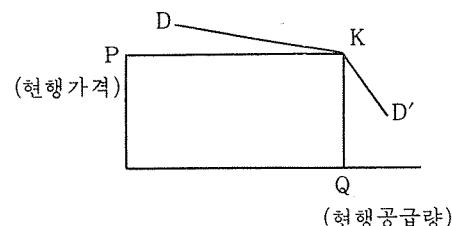
屈折需要曲線모델

反對로 한 供給者가 価格을 引上한다면 他 供給者는 現 価格을 유지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相對的으로 低廉한 価格 條件으로 因하여 販賣量이 대폭 增大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假定을 圖表로 表示한 것이 폴·스위지 (Paul Sweezy)의 屈折需要曲線 모델이다.

屈折需要曲線에 依한 과점 価格 理論을 아래 圖表에 의하여 간단히 살펴 보면, 現在의 가격을 P라고 할 때, 한 企業이 가격을 引上하는 경우는 그 企業의 需要是大幅 減少하는 反面, 価格을 引下하는 경우의 그 企業의 需要增加는 別로 期待할 수 없다.

따라서 需要 曲線 DK는 価格에 탄력적이며 KD는 비탄력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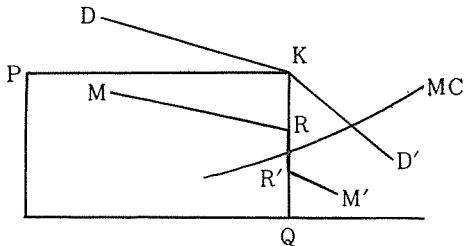


이러한 個別 企業의 需要 曲線에 의한 限界수입 曲선은 아래 圖表의 MRR'M과 같은 모양이 된다(한계 수입 曲선은 需要 曲線에서 도출되는 것이며, 도출 方法은 大部分의 經濟原論에서 취급하고 있으므로 省略한다).

企業의 利益은 限界收入과 限界費用이一致될 때에 極大化 하는 것이므로 만약 이 企業의 限界費用曲線이 R과 R' 사이를 통과하고 있다면, 現行 価格은 均衡 価格이 되고 安定的인 수급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均衡을 이루고 있는 価格은 原價 变動이나 需要 變動에 대단히 경직적이다.

즉 企業의 費用 절감이나 原價 상승에 따라 限界費用曲線 MC가 上下로 움직이더라도 R과 R' 사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現行 価格은 그대로 維持되는 것이다.



IV. 寡占供給이 아닌石油製品市場

모든石油製品價格이 다屈折需要曲線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輸出,美軍納,國際벙커링은告示價格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市場의性格上寡占供給狀態가 아닌 것이다.

구체적으로説明하면,美軍納은內國需要으로國內精油會社가供給權을 갖고 있는寡占狀態인 것으로生覺되기 쉬우나,美軍은國內法에의하여輸入制限을 받지 않으므로隣近國家에서 도입할 수도 있는 것이다.

외항선 또는 외항기의 경우도 선주가 연료를供給받는 항구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國際경쟁狀態에 있는市場인 것이다.

이러한市場에對한供給價格은 앞서説明한寡占價格과는 달리原價를充實히反映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原油도입에과다한政府部門費用이부과된다면이러한market에의供給은 채산이안맞게되며,결국은販賣量減少로인하여精油會社稼動率이低下되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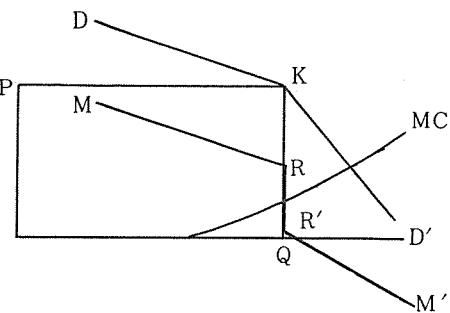
輸出,美軍納,國際벙커링에對해서原油導入時 징수하였던,関稅,基金等을還給해야 할必要性이여기에있는것이다.

V. 自律化된石油製品價格

寡占價格에對한例外는國內市場에도 있다. 内国籍 외항선이나 内国籍 外航機(KAL)에의供給은告示價格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實質적으로는國際벙커링과 마찬가지로國際競爭狀態의市場이다.溶剤의경우는공급업체가精油會社에만局限되어있지않고처리나프타를購入하여溶剤를제조하는業體가여럿있으며,石油chemistry溜分業界에서도供給되고있다.따라서용제市場은거의完全競爭에가까운실정이며,市場價格은告示價格과는상관없이生產原價를反映하고있다.

政府는이러한시장구조를고려하여1983년2월용제價格을自律화하였다.

告示價格에서自律화된品目으로서溶剤外에



純利益의增加

따라서企業의原價節減努力은 단기적으로는 그대로純利益増大로 나타난다(누가國內精油會社의費用節減無用論을렸던가?).

여기서序頭에제기되었던揮發油가격문제를檢討하여보자.

휘발유는여타石油製品과마찬가지로一般商品에比하여價格에비탄력적이다.

따라서아래도표에나타난바와같이,KD'는높은기울기를갖게되며,이에따라限界收入曲線R'M'는상당히낮은위치에놓여지게된다.

이것은現行價格에比하여限界費用이아무리낮더라도,바꾸어말하면,生產原價에比하여製品價格이아무리높더라도그價格이安定的으로維持될수있다는説明이된다.

우리는여기서한企業의限界収益과限界費用이폐리된狀況에서market價格이均衡을이루고있는것을보았다.

이러한屈折需要曲線덕택으로政府는各油種의最高價格을策定함에있어서油種間의原價體系에크게구애받지않고国家油類정책에따라産業用油類및庶民用油類價格은낮게,消費用油類가격은높게매겨왔던것이다.

제트油가 있다. 제트油에는 民間 航空機에 供給되는 JetA-1과 軍用인 JP-4의 두가지가 있는데 JetA-1은 앞서 說明된 바와 같이, 國際 競爭 狀態이므로 價格을 自律化한 것은 当然한 조치라 하겠다.

그러나 JP-4는 軍納油種으로서 寡占 供給 狀態인 同時に 需要 獨占인 商品이다. 이러한 商品의 價格을 市場 機能에 맡기다면, 과연 어떻게 價格이 形成될 것인가? 만약 精油社가 JP-4 가격에 대하여 談合을 한다면 市場의 類型上 쌍방 獨占의 狀態가 이루어 지는 것인데 이것은 公定去來 (독점규제 및 公定거래에 관한 法律)에 어긋나게 된다.

만약 精油會社間에 입찰 경쟁을 한다면, 가장 낮은 價格을 提示한 精油社가 供給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즉 石油 製品은 연산품이므로 JP-4販賣가 增大된다고 해서 JP-4만 生產量을 增加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어느 정도 他 製品의 需要가 뒷받침되어 있어야 각 油種의 生產量과 供給量이 均衡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軍用 油類는 各 精油社로 하여금 대체적으로 규모에 比例하여 분할 供給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JP-4價格은 누가 어떻게決定지어야 하는가? 油價를 담당하고 있는 필자로서도 가장 풀기 어려운 과제이다.

VII. 油價는 損益인가? 需給인가?

• 이제 까지 이야기 된 것을 整理하면, 石油製品 市場은 寡占 供給 狀態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 있는데, 告示 價格의 對象이 되는 國內 市場은 溶剤와 제트油를 除外하고는 거의 大部分 寡占 供給 狀態이다.

寡占 價格은 屈折 需要曲線理論에 따라 價格이 경직적이므로 政府는 告示 價格 決定時 油種間의 原價 体系와 상관없이 정유사의 총 원가를 보상 할 수 있도록 각 油種의 價格을 策定하고 있다. 이러한 油價 決定 方法은 1964年 國內 最初의 精油社 創立 以來 現在까지 지속되어 왔으며, 여기에서 「油價는 損益이다」라는 名言(?)

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제 까지 論議된 것은 序頭에 언급된 바와 같아, 寡占 供給 價格의 安定 여부에 관한 두 가지 見解中 安定의 均衡 價格이 維持될 수 있다는 理論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 理論은 寡占의 모든 形態를 說明하는 것이 아니라, 寡占이 취할 수 있는 한가지 형태를 說明하고 있을 뿐이며, 現行 價格水準이 경직적이라는 것만 이야기할 뿐, 價格의 높이가 어떻게 決定된 것인지는 하등 說明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安定 理論에 대항하여 에지워어드 (Edgeworth)는 寡占 市場에서의 價格 決定은 不確実하며 不安定하다고 主張하였다. 이러한 相反된 두 가지 主張은 寡占 供給者中 한 供給者の 行動에 對한 他 供給者の 反應을 어떻게 解釋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에지워어드는 複占 (duopoly)의 狀態에서 만약 價格 決定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것은 이윤을 極大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相對를 타도하여 市場을 支配하려고 하는 것이며 따라서 價格 競争의 下限線은各自의 供給量을 다 賣盡할 수 있는 水準이 되므로 거칠없는 競争이 반복되게 된다는 것이라고 主張한다.

이러한 不安定 價格의 實例로는 1981년도의 挥發油 價格 競争과 1983年初의 LPG市場 경쟁이 있었으며, 언제 어느 市場에서 이러한 競争이 또 다시 벌어질지 알 수 없다. 이러한 異常 경쟁은 휘발유나 LPG에 過多한 마진이 붙어 있는 데 따른 供給 과잉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反対로 價格이 原價에 밀 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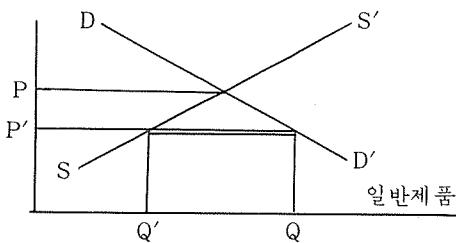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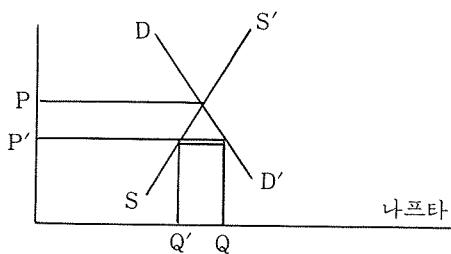
最近의 나프타 供給不足 現象이 이러한 역마진이 供給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例이다.

우리 나라의 나프타 價格은 1970年代 후반 以後 石油化学 產業의 보호 育成을 위하여 相對的으로 低價로 維持되어 왔으며, 1981년 以後에는 B-C油 價格보다도 낮게 策定되어 왔다.

나프타를 原價 以下로 策定한 背景은 石油製品이 연산품이므로 國내 精油 工場의 가동률이

일정 수준에維持된다면 나프타의供給量이 수급에 심각한 영향을 줄 만큼減少되지는 않을것이며, 나프타의 용도는 비료용과石油化学用으로需要가限定되어 있으므로,需要와供給이 모두価格에비탄력적이라는 데에 있다.

이를 도표로説明하면, 나프타의 수요 공급은 모두価格에비탄력적이므로一般商品에비하여需要曲線과供給曲線이 모두수직에가깝게 되며, 이에 따라 가격 억제($p \rightarrow p'$)에 의한 공급부족(QQ')이相對적으로적게나타난다.



그러나 위의理論과는 달리 나프타供給不足이現在와같이深化된 것은 나프타의価格억제가長期화된 데에기인한다.

나프타의需要와供給이価格에비탄력적이라는것은단기적인것이며(1년정도),長期의으로보면需要측면에서는나프타를연료로使用하기위한연료시설代替현상이나타나게되어需要는결과적으로価格에탄력적이되는것이며,공급의경우에도長期原油供給契約上의도입原油油種을변경함으로써나프타의收率(수율)을줄여나갈수있는것이다.結局原価以下의価格策定은短期대책에局限되어야하는것이다.

우리는이제까지寡占価格의不安定性이파

다마진또는역마진에기인함을살펴보았다.

価格의不安定은반드시需給의不均衡을낳게된다.

따라서石油製品의안정된供給을위해서는価格이安定되어야하며, 이를위해서는各石油製品의価格이油種間의原価體系를反映하고있어야되는것이다.

結論的으로石油製品의価格은損益개념으로파악되기보다는需給조절機能으로理解되어야할것이다.

VII. 油価自律化방안

우리나라의油價管理의 기본방향은民間部門의価格은市場기능에의한企業의自律의결정을原則으로하되, 경쟁이활성화되지못한분야중國內競爭이가능한품목은경쟁을促進하고,國內競爭이불가능한분야는海外경쟁력을導入하여보완하고, 경쟁요건이充足되지못하고있는분야에대해서는価格의감시내지規制기능을정부가보유하도록하고있다.

政府가油價自律化를추진하고있는것도이러한기본정신에입각하고있는것이며, 그1단계로지난83年2月油價調整時경쟁요건이造成되어있는溶剤및제트油價格을자율화한바있다.政府는앞으로価格規制方式을직접규제에서간접규제로바꾸어나가고對象油種도점차 확대해나갈방침이다.

이러한方向設定의大前提是価格의직접규제가가장원시적인형태의經濟運用방법이며,自律價格制度가가장最善의가장發達된제도라는것이다.즉경제가發展될수록자율경제체제화되는것이며,현재規制되고있는독과점가격도점차자율화시켜나간다는것이다.

대부분의경우이러한論理는지극히타당한것이라할수있겠다.그러나全世界的으로重要資源의경우, 특히石油資源의경우는資源保有국의政府가政策的으로management하고있으며,產油국의政策方向이石油消費國에미치는영향은지대하다.따라서先進石油消費國들도自國의石油에너지供給에깊이관여하고있으며,같은원리로需要供給의척도인價格決定에介入

□ 特輯/低油価時代의 에너지政策方向 □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英国과 独逸을 제외한 모든 유럽 국가들이 石油製品価格을 管理(Controll or Monitor)하고 있다. 예외적으로自律価格을 실시하고 있는 英国은 상당량의 石油資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며, 独逸의 경우는 世界現物市場인 ローテ르담이 인접해 있고 이웃나라인 이탈리아가 약 400만 배럴의 精製施設을 갖고 경제輸出활동을 펴고 있는 특수여건에 처해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石油類에 관한한 價格自律化

는 여전조성의 문제이지 国家經濟發展 단계의 문제는 아니다. 国内여건을 살펴보면, 石油에 너치는 100%輸入에 의존하고 있고, 市場競爭의 측면에서 볼 때도 国内油類需要는 앞으로 크게 증가되지 않을 것이므로 現在의 寡占供給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 油價制度의 改善方向은 價格決定을 市場기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價格책정업무를 民間部門에 이양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

□ 海外石油情報 □

日本의 石油稅制 年間稅收 규모 3兆7百億円

「現代社會의 血液」이라고 불리우는 石油는 稅金을 만들어 내는 샘이기도 하다.

日本의 경우, 간접세의 부과방법은 나무에 비유한다면, 뿌리에 달린 것과 가지나 잎에 달린 것 등 여러가지가 있다. 현재 日本에서 石油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의 종류는 모두 7가지가 있다.

우선 原油輸入에는 kl 当 6백 40円의 関稅가 부과된다. 이 관세는 지난 50년대 중반 石炭으로부터 石油로 에너지 革命이 진행될 때, 사양화되는 국내석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財源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다음에는 輸入價格과 関稅의 合計額에 대해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石油稅가 있다. 이것은 지난 78년에 생긴 새로운 세금으로 石油의 비축이나 개발, 대체에너지개발에 사용된다.

이 두가지 세금은 뿌리에 달린 세금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灯油等 모든 석유제품가격에 이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 製品別 과세가 기다리고 있다. 揮發

油稅와 道路稅의 총칭인 가솔린稅는 l 当 53円 80錢. 지난 73년의 第1次 石油危機 이후 3차례나 인상되어 그 稅收 규모는 2兆円에 이르고 있으며, 酒稅보다 약 1천억円이 더 많다. 하나의 상품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으로서는 단연 1位이다.

택시를 달리게 하는 LPG(液化石油ガス)에는 石油ガス稅, 버스등의 연료인 軽油에는 軽油去來稅가 부과된다.

이와 같은 7가지 稅金으로 거둬들이는 稅收는 연간 3조7백 57억円(83년도 예산)에 이르고 있다.

石油稅制에서 언제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稅金의 용도. 稅收의 거의 80%가 도로 정비에 쓰여지고 있다. 가솔린稅, 軽油去來稅, 石油ガス稅는 「도로의 整備費는 그 이용자가 부담한다」는 수익자부담원칙의 目的稅이다. 따라서 日本의 도로사정이 크게 향상된 현재에도 도로건설에 여전히 石油稅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